

# 다전공 운영규정

(제정 2017. 9. 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7조에 따른 다전공의 이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수전공이란 주전공이 아닌 타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학과의 학위를 복수로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전공이란 주전공이 아닌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일정한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학위증에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구성한 전공을 말하며,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자기설계연계전공을 포함한다.
4. 융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의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구성한 전공을 말하며, 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융합전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9.2.18.>

**제3조(세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다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편람」으로 정한다.

## 제2장 복수전공

**제4조(범위)** 복수전공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복수전공이 제한되는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에 대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 복수전공의 신청자격은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다만, 음악학과는 실기 및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정하여 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 등)**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복수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② 학과(전공)별 복수전공 이수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인원, 제한사유, 전형방법 등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강지도)**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수강 및 진로 지도는 복수전공 학과장(전공주임)이 담당한다.

**제8조(이수 및 포기)**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편람의 교육과정 이수기준표에서 정하는 기본과정(전공기초 + 전공필수 +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졸업시험·자격증대체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② 복수전공의 이수 여부는 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졸업사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복수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부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한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④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복수전공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제9조(학위수여)** 주전공(제1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10조(실비납부)** 실험실습 또는 기자재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과(전공)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험실습비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장 부전공

**제11조(범위)** 부전공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이 제한되는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 및 융합전공에 대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자격)** 부전공의 신청자격은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다만, 음악학과는 실기 및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정하여 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절차 등)**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부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② 학과(전공)별 부전공 이수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인원, 제한사유, 전형방법 등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강지도)**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수강 및 진로 지도는 부전공 학과장(전공주임)이 담당한다.

**제15조(이수 및 포기)** ① 부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편람의 교육과정 이수기준표에서 정하는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만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② 부전공의 이수 여부는 부전공 학과(전공)에서 졸업사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부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④ 부전공 이수자가 부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부전공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제16조(실비납부)** 실험실습 또는 기자재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과(전공)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험실습비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장 연계전공

**제17조(전공개설)** ① 연계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연계전공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의 신설은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다만, 연계전공 주관학과에서 연계전공의 폐지를 희망하거나 연계전공 개설 후 4학기 이상 경과된 시

점에서 최근 2학기동안의 이수인원이 평균 10명 미만인 경우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혁신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폐지할 수 있다.

③ 연계전공에 주임교수를 둔다.

④ 본교에 개설된 연계전공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연계전공 참여학과에서 기 개설한 과목
2. 9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연계과목
3. 그 밖의 학과(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과목

② 교육과정은 이수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45학점 이상으로 편성하며, 필요에 따라 전공필수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신청자격)** 연계전공의 신청자격은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제20조(신청절차 등)** ① 연계전공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연계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② 학과(전공)별 연계전공 이수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인원, 제한사유, 전형방법 등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이수 및 포기)** ① 연계전공은 36학점 이상의 연계전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제1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이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에는 15학점 범위에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계전공간 동일과목 이수 학점 및 졸업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법령에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② 연계전공의 이수 여부는 주관학과에서 졸업사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가 연계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또는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가 연계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연계전공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제22조(학위수여)** 연계전공 이수자에게는 주전공 및 연계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23조(자기설계연계전공)** ① 자기설계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설계연계전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을 거쳐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기설계연계전공은 주전공 학과(전공), 타 학과(전공), 교양과목 등 본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 중에서 45학점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자기설계연계전공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이수 및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계전공신청서는 자기설계연계전공신청서, 주관학과는 주전공(학과), 연계전공 주임교수는 주전공 학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 제5장 융합전공

**제24조(전공개설 및 폐지)** ① 융합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융합전공 개설신청서를 작성하

여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교원은 신청학과(전공) 소속의 전체 또는 일부 교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융합전공의 신설 및 주전공으로 인정하는 융합전공의 승인은 융합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12.10.>

③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융합전공의 폐지를 희망하거나 융합전공 개설 후 4학기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최근 2학기 동안의 이수인원이 평균 10명 미만인 경우 융합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④ 융합전공에 주임교수를 둔다.

⑤ 본교에 개설된 융합전공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12.20.>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2. 15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융합과목. 다만, 주전공으로 인정한 융합전공의 경우 18학점 이내에서 신설 <개정 2019.12.20.>

3. 그 밖의 학과(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과목

② 교육과정은 이수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45학점 이상으로 편성하며, 필요에 따라 전공필수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전공으로 인정하는 융합전공의 경우 60학점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9.12.20.>

③ 신설하는 융합과목의 3분의 1 이상은 관련분야 산업체전문가가 강의를 담당하거나 팀티칭을 하고, iClass 및 PBL 등의 방법으로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9.1.>

④ 융합전공 과목은 정규학기의 야간 또는 계절학기에 개설할 수 있으며, 집중이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절수업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9.1.>

**제26조(신청자격)** 융합전공의 신청자격은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하며, 융합전공의 주전공 신청은 재학 중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20.>

**제27조(신청절차 등)** ① 융합전공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융합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② 학과(전공)별 융합전공 이수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인원, 제한사유, 전형방법 등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이수 및 포기)** ① 융합전공은 복수전공, 부전공 또는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주전공(제1전공)을 중복하여 인정하되, 융합전공간 동일과목 이수 학점 및 졸업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8.2.1., 2019.12.20.>

1.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주전공 이수 과목에 대해 12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다. 융합전공 참여학과 과목 9학점 이상 이수

-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과목 또는 참여학과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 2.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가. 주전공 이수 과목에 대해 6학점 중복 인정
  - 나. 신설 융합과목 9학점 이상 이수
  - 다. 융합전공 참여학과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과목 또는 참여학과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 3.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 가. 신설 융합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 나. 융합전공 참여학과 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 다. 그 밖에 신설 융합과목 또는 참여학과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 ② 융합전공의 이수 여부는 주관학과에서 졸업사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18.9.1.>
- ③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가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또는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④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융합전공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8.2.1.>

**제29조(학위수여)** ①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하고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②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신청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본조개정 2019.12.20.]

**제30조(산학융합전공)** ① 산학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융합전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2.18.>

1. 산학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9.2.18.>
  - 가.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 나. 21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융합과목
  - 다. 그 밖의 학과(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과목
2. 산학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의 전공이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9.2.18.>
  - 가. 주전공 이수 과목에 대해 9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 나. 신설 융합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 다. 융합전공 참여학과 과목 6학점 이상 이수
  -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과목 또는 참여학과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 ② 산학융합전공은 이수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 전형 및 선발 등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18.>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별표 1] <개정 2018.2.1., 2019.12.20.>

### 연계전공 및 학위명

연계전공명	학위명
독서·논술교육	문학사
벤처창업	창업학사
보육학	보육학사
식품영양학	이학사
일본IT융합	글로벌IT학사
중국비즈니스	경영학사

※ 연계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8.2.1., 2018.9.1., 2019.2.18., 2019.12.20.>

### 융합전공 및 학위명

융합전공명	학위명
Food R&BD	Food R&BD학사
Korean Studies	한국학학사
경영법학	경영법학학사
국토정보학	국토정보학학사
농생명-ICT	농생명-ICT학사
대물차량손해사정	대물차량손해사정학사
라이프스타일기획	라이프스타일기획학사
보컬퍼포먼스	보컬퍼포먼스학사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학사
스마트팜	스마트팜학사
스토리미디어	스토리미디어학사
탄소융합	탄소융합학사
하림산학	산학융합학사

※ 융합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림산학융합전공에 경영혁신, 공무설비, 기획, 내외자 구매, 노사인사, 물류, 법무, 사육부화  
경영관리, 생산관리, 설비구매, 정보전략, 제품개발, 품질, 홍보, 환경안전 트랙을 둔다.